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 신설〉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46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12. 13.
3. 회부연월일 : 2024. 12. 1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등의 제조·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등의 제조·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승강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휴업신고 및 휴업한 사업의 재개신고 의무를 그 휴업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39조제4항).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략)                                                                                                                      |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u>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u>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u>&lt;신설&gt;</u> | ④ -----<br>-----<br>-----<br>----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u> -----<br>-----. |
| <u>&lt;신설&gt;</u>                                                                                                                                            | <u>1.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u>                                                               |
| <u>&lt;신설&gt;</u>                                                                                                                                            | <u>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u>                                                        |
| <u>&lt;신설&gt;</u>                                                                                                                                            | <u>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다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u>                                     |
|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 ③ (생략)                                                                                                                               |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
| <p>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u>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u>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 <p>④ -----<br/>-----<br/>-----<b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br/>-----.</p> <p>1.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p> <p>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p> <p>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다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p> |

현행법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가 등록한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sup>1)</sup>하고 있음.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

그런데 휴업신고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신고와 관련하여 영업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단기 휴업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승강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중 하나로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6개 법률에 대하여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24년 12월 10일에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 및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신고 의무 완화 대상 법률]

| 연번 | 정비 대상 법률                       | 업종                       | 개정 내용                    | 소관 부처   |
|----|--------------------------------|--------------------------|--------------------------|---------|
| 1  | 법무사법                           | 법무사업                     | ·30일 이상<br>휴업 시<br>휴업 신고 | 법무부     |
| 2  | 변호사법                           | 변호사업                     |                          |         |
| 3  | 외국법자문사법                        | 외국법자문사업                  |                          |         |
| 4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br>관한 법률            | 상시계측관리업                  |                          | 행정안전부   |
| 5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제조·수입업,<br>승강기 유지관리업 |                          |         |
| 6  | 자연재해대책법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                          |         |
| 7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br>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경감활동계획<br>수립 대행업       |                          |         |
| 8  | 인삼산업법                          | 인삼류제조업                   |                          | 농림축산식품부 |
| 9  | 산림기술 진흥 및<br>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기술용역업                  |                          | 산림청     |
| 10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사업                  |                          | 산업통상자원부 |
| 11 | 전기·전자제품 및<br>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폐자동차재활용업,<br>폐가스류처리업     |                          | 환경부     |
| 12 | 환경오염시설의<br>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허가대행업                  |                          |         |
| 13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br>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사업                   |                          | 해양수산부   |
| 14 | 어장관리법                          | 어장정화·정비업                 |                          |         |
| 15 | 항로표지법                          | 위탁관리업                    |                          |         |
| 16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사업                   | ·15일 이상<br>휴업시<br>휴업 신고  | 해양경찰청   |

개정안은 승강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가 휴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영상의 이유

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승강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생각됨.

|              |
|--------------|
| 문 의 처        |
| 02)6788-5349 |